

협약서

중랑소방서와 중랑구치매안심센터는 상호 협동교류를 통한 상호발전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협약을 체결한다.

제 1조(목적)

중랑소방서와 중랑구치매안심센터는 긴밀한 협력체계 구축을 통하여 치매환자와 가족에 대한 지역의 따뜻한 공감과 이해를 높이고 양 기관의 발전과 복지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.

제 2조(협력사항)

본 협약에 의거 다음과 같은 사항을 상호 협력한다.

1. 치매관련 정보제공
2. 치매환자의 응급상황 발생 시 신속한 구급서비스 제공을 위한 119 안심콜 신청
3. 예산 및 설치 기준에 적합한 대상자 화재감지기 보급
4. 치매환자 응급상황 발생 시 신속 조치 및 행정교류
5. 기타 양 기관의 발전과 상호협력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

제 3조(협약기간)

본 협약 시행기간은 1년으로 하고, 연장은 종료 1개월전 협의한다.

제 4조(협약준수)

본 협약을 준수하기 위하여 양 기관은 상호협력하여야 하며 협약유지가 불가피할 경우 상대방기관에 1개월전 사전에 고지하여야 한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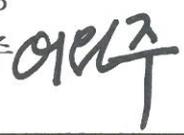
제 5조(기타)

1. 본 협약에 명기되지 아니한 협력사항 또는 교류 협력의 내용 수정 필요시 양 기관 협의 하에 별도로 정한다.
2. 본 협약이 유효하게 성립되었음을 증명하기 위하여 협약서 2부를 작성하여 양 기관의 대표자가 각각 서명하고 1부씩 보관한다.

중랑소방서와 중랑구치매안심센터는 선도기관을 통해 치매에 대한 지역의 따뜻한 공감과 이해를 높이고 행복한 지역공동체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.

2019 년 9 월 4 일

중랑소방서장

이 원 주 

중랑구치매안심센터장

하 라 연 